

경기도 공고 제2026-970호

2026년 경기도 품질경영활동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

경기도 내 중소기업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경기도 품질경영
활동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

2026년 4월 20일
경기도지사

1 사업목적

- 품질혁신을 위한 기업 맞춤형 교육 및 현장 지도를 통해 혁신 활동 우수기업 육성
- 품질향상, 부적합품률 감소, 원가절감 등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품질 경쟁력 제고

2 공모분야

① 품질혁신 지원

- 사업내용 : 중소기업의 설계, 제조, 사용품질에 대한 진단을 통해 주요 혁신 과제를 도출하고 해당 주제의 전문가와 함께 문제 해결
- 지원기간 : 협약일 ~ 2026. 11월 말까지
- 사업량 : 도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개사 내외(지원금 소진 시까지)
 - * 중소기업 우대 선정, 중견기업은 전체 모집 기업 수의 30%이하로 선정
- 지원분야 : 현장개선, 3정5S*, 공정개선, 설비개선, 신뢰성, 안전관리, 서비스품질 등
 - * 3정(정품, 정량, 정위치) 5S(정리, 정돈, 청소, 청결, 습관화)
- 지원내용 : 품질경영 진단 실시, 도출 과제에 따른 전문가 파견, 현장개선 및 안전관리 활동지원, 교육 및 워크숍 등
- 지원금액 : 기업당 최대 10백만원(자부담 30% 이상) 한도
 - (신규 지원기업 1개사) 기업당 최대 10백만원(자부담 30% 이상) 한도
 - (기존 분임조대회 출전기업 1개사) 기업당 최대 3백만원(자부담 30% 이상) 한도
 - * 사후 발생비용 및 지원한도 초과금(부가세, 관세, 환급금, 지원금)에 대한 비용은 기업자 부담

○ 지원조건 : 2026년 11월 30일까지 품질혁신 지원

* 외부 요인에 의한 특수사정으로 11월30일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12월31일까지 연장

○ 신청방법과 우대 및 제외 사항

구분	내 용
사업 담당자 및 문의처	한국표준협회 경기강원지역본부 이효빈 책임 / 한병주 연구원 (Tel) 031-8031-9661
신청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원서 제출(붙임양식 참조) · 증빙서류 및 신청서는 스캔 후 이메일(gyeonggigangwon@ksa.or.kr) 송부
우대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유망중소기업, 장애인기업, 여성기업, 사회적기업, 향토기업, 경기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기업, 특히, 실용신안 등록기업, 산단 RE100 참여기업 · 기술품질 우수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KS, ISO 등 품질시스템 확보 기업 - NT, KT, EM, GQ 등 품질인증 기업 · 특히, 실용신안 등록기업 · 지역일자리 및 경제기여도 우수기업(일자리창출, 수출실적) · 품질관리부서운영, 품질관련 수상기업 우대 · INNO-BIZ기업, 벤처기업, 노사문화우수기업, 경기도중소기업대상 수상 기업, 정부기관장표창기업, 인적자원개발 관련 수상기업
지원대상 제외 및 중단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년도 경기도 품질혁신 지원 수혜 기업 (단, 2026년도 분임조대회 출전기업의 경우 제외) ·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의해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· 최근 2년 이내 공정·노동·환경·납세 관련 11개 법 위반 사실 적용 (사업선정 전)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평가 총점의 20% 감점 적용 (사업선정 후) 과거(공모일 이전)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제한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조금 반환·사업 선정 취소 -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-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· 그 외 다른 결격사유가 있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또는 지원 중단

3 추진일정

단계	일정	주요 추진 내용
사업공고	2026. 4월 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문발송 : 유망 중소기업, 품질분임조정진대회 참가기업,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등 ○ 경기도 이즈비즈사이트(www.egbiz.or.kr) 공지
사업신청	~2026. 4. 28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청마감 : 2026년 4월 28일(화) ○ 접수처 : 한국표준협회 경기강원지역본부
선정위원회 구성	2026. 5월 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구성(안) : 5명 내외 (주관기관, 학계, 전문가)
기업 선정 심의	2026. 5월 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업 선정위원회 개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류 평가 ○ 범위반 기업 조회, 소명 및 구제, 최종 선정
협약체결	2026. 5월 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협약 체결(한국표준협회, 기업체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협약서류 : 협약서, 참여의사 확인서, 사업자등록증
진단실시	2026. 5월 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업별 전문가 지정 및 세부 진단 실시(2일) ○ 기업체 애로 문제 과제 도출 및 결과 보고 ※품질혁신지원 기업 대상
진단결과 보고회	2026. 5월 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기도 사업 추진 Kick-off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각 기업별 진단결과 종합 보고
사업수행	2026. 5월 ~ 11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증 획득 및 품질경영 개선 실시 ○ 전문가 현장 파견 ○ 현장 실사 실시 : 경기도, 한국표준협회
성과보고 및 사후관리	2026. 12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성과 공유 ○ 사후관리 및 평가, 차기년도 계획 수립

※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4 신청 및 제출서류

구 분	내 용
신청기간	2026.04.20.(월) ~ 2026.04.28.(화) 18:00
담당자	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 이효빈 책임 / 한병주 연구원 (Tel. 031-8031-9661)
신청방법	신청서 및 첨부 서류작성 제출 증빙 서류 및 신청서는 스캔 후 이메일 송부 e메일 접수처 : gyeonggigangwon@ksa.or.kr * 접수는 파일로만 제출하며 인쇄본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음
선정기업 통보	2026. 5월 중 ※ 선정기업 개별통보
사업참여 특전	경기도 중소기업대상 및 유망중소기업 신청 시 가산점 부여
기타사항	신규 신청기업 우선지원

5 심사·선정

- 심사방법 : 심사평가표에 의한 선정위원회 심사
- 심사기준

공모분야	평가내용	비고
품질혁신 지원	지역경제기여도(15), 기술품질획득실태(10), 품질경영참여의지(40), 사업계획서 평가(35), 가점(5)* * 우대사항 가점(각1점, 최대5점)	

- 선정기준 :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공모분야별 최고 득점 순으로 선정하고, 해당기업이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후순위 기업 순으로 선정
- 결정통보 : 선정기업 개별통보

[붙임-2]

『2026년 경기도 품질경영 개선지원 사업』 신청기업 현황서(공통)

① 인원 현황 (2026년 현재)	총 명	업무분장 및 세부 사항		
	기술직 명			
	사무직 명			
	생산직 명			
	영업직 명			
	기타 명			
② 재무 현황	구 분	2023년	2024년	2025년(예상)
	자본금	천원	천원	천원
	매출액	천원	천원	천원
	당기순이익	천원	천원	천원
③수출 현황	내 수	천원	천원	천원
	수출액	천달러	천달러	천달러
	수출지역			
④인력 현황	상시종업원수	명	명	명
생산 현황	연간 생산량			
⑤ 기업 소개서	※ 신청 목적과 현재 자사에서 고려하고 있는 최우선 개선과제 포함 작성			

- ※ ①, ④ : 월별 건강보험(4대보험 중 택 1) 납부대상인원 기준. 상시종업원 = 연도별 월인원 합산 ÷ 12
- ※ ② 증빙서류 제출 : 연도별 재무제표 사본 각 1부, 2023년은 결산 여부에 따라 제출
- ※ ③ 증빙서류 제출 : 수출실적 확인서류(수출실적증명서, 수출면장, 수출대금 입금확인서 중 택 1)
수출주문확보 확인서류(수출계약 및 Order에 따라 계약서 또는 수출신용장 등)
- ※ ⑤ : 신청서 및 기업 현황의 내용을 서술하여 별지 작성해도 무방하며, 회사 브로셔 등(파일)로 대체 가능

[붙임-3]

『2026년 경기도 품질경영 개선지원』 사업계획서(품질혁신)

1. 신청 배경 및 목적

- 신청 목적 및 배경 : 왜 현 시점에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이나 본 사업 참여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기술

-
-
-
-
-

2. 경기도 지원 필요성

- 지원 필요성 : 현재 가지고 있는 현상이나 문제점 그리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들, 중장기적 관점의 문제 해결도 포함하여 작성

-
-
-
-
-

3. 개선 노력 및 활동

- 개선 노력 : 문제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자체적으로 시도한 개선 노력 및 활동을 기술(ex. 자체 활동, 외부 컨설팅 수행경험 등 포함)

-
-
-
-
-

※ 선정평가지 기업의 참여 목적과 의지를 알 수 있도록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
4. 추진 방법

1) 참여 인력 현황

○ 개선 활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 참여 인력 현황

(총괄책임자-대표 000, 추진책임자-품질부서장 000, 추진자- 품질팀 000, 생산팀 000 등) 작성

성명	직급	부서명	근무년 수	역할	전자우편	연락처 (Tel.)
000	대표		15	총괄	@	00-000-0000

2) 일정 계획

○ 지원기업으로 선정 시 진행 추진 일정안을 서술

구분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지원서 작성 및 제출										
품질 진단										
현상 파악										
문제 도출										
.										
.										
.										
.										
.										
성과 보고회 발표										

[참고]

『경기도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』

경기도 고시 제2026-8호

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

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기업선정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「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. 1. 8.

경 기 도 지 사

1. 추진목적 : 기업의 법 준수 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기업 성장 경영문화 전환 등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2. 적용대상 :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
- (도내 기업) 등기부등록상 주 사무소, 영업소,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
3. 적용사업 : 道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적용하되, 아래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 적용 제외
 - 가. 제외사업은 향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에 따라 제한기준 적용 대상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음
 - 나. 사업유형별 적용제외·유예사업
 - 1) (계도·개선사업) 법령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 목적의 사업
 - 2) (사업운영비·소액사업) 예산용도가 사업운영비 한정, 소액·다수기업 지원사업
 - 3) (비경쟁사업) 기업수요가 비상시적이고 기업 필요성에 따라 순차 지원 사업
 - 4) (자금·융자지원 사업)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사업으로 수익자가 부담
 - 5) (시·군 매칭(보조) 사업) 도비 보조 또는 매칭비율에 따라 시군 지원사업
 - 6) (소상공인 지원목적 사업) 소상공인 지원 및 목적 용도의 사업
 - 7) (투자유치 지원) 경기도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(인센티브) 사업
4. 위반사실 적용법률 : 공정, 노동, 환경, 납세 분야 11개 법률
 - 가. 적용법률
 - 1) (공정)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
 - 2) (노동)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
 - 3) (환경)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
 - 4) (납세)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

나. 위반사실 적용 11개 법률 중 경미한 47개 범위반 행위(붙임 1)에 대하여 조건부 적용 유예
다. 위반 사실 적용 법률은 사업 부서별·사업 특성에 따라 지침·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

5. 위반사실 조회기간 : 사업 공모일(모집일) 기준 2년 이내

가.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, 과징금, 과태료

나.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, 고발건은 확정 판결 확인 시 제한기준 적용

6. 사업참여 제한조건 : 법 위반 사실 확인시(1회 이상) 평가 총점의 20% 감점 적용

가.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[범위반사실여부 협약서(서식2) 내용과 상
이] 사업 취소·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

나. 유예대상 47개 범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범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(서식4) 제출 시
평가 총점의 20% 감점 미적용

- 단, 유예대상 47개 범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이행각서를 제출하고,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사
업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 취소·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
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

다.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부서별(사업별) 법 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
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

7. 범위반사실 확인 : 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

가. (공정)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처분내역 조회

나. (노동)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조회

다. (환경) 기업 소재지 관할 도·시군 조회

라. (납세)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확인

8. 이의 및 구제신청 : 범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대상자

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 및 구제신청서(서식3) 제출

- 사업자선정위원회 등(실국 또는 수탁기관)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
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(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) 사업자 선정전 구제여부 결
정 및 통보

※ 기업의 권리구제,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 기한 연장 가능

9. 제출서류 :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서식1), 기업의 범위반사실(부존재) 여부 협약서(서식2)

10. 고시 효력일 : 고시일 ~ 차기 고시일 전까지

11. 문의처 :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(☎ 031-8030-2993)

[참고 2]

『유예 대상 47개 법 위반 행위 목록』

구분	법령	법위반 행위
1	공정거래법	• 지주회사 설립 불성실신고
2	공정거래법	•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 불성실신고
3	표시광고법	• 공정위 조사에 불출석
4	근로기준법	• 노동위, 근로감독관에 대한 불성실 보고
5	근로기준법	• 법령 등 주요 내용 게시 의무 위반 (취업규칙 등에 관한 열람보장 위반)
6	근로기준법	• 사용증명서 발급 위반 (미발급)
7	근로기준법	• 근로자명부 작성 위반 (미작성)
8	근로기준법	• 계약서류 보존 의무 위반 (계약서류 미보존)
9	근로기준법	•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의무 위반 (대장, 명세서 미작성)
10	근로기준법	• 연소자 증명서 비치 위반(미비치)
11	근로기준법	•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(취업관련 규칙의 신고 미이행)
12	산업안전보건법	• 산업안전지도사 등록, 등록갱신 미이행
13	산업안전보건법	• 산업지도사의 보증보험 미가입 등 필요조치 미이행
14	산업안전보건법	• 산업지도사의 직무 수행 중 작성한 서류 등에의 기명 날인 서명 미이행
15	산업안전보건법	• 중대재해 사실의 불성실 보고
16	산업안전보건법	•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 대표 참여 의무 위반 (근로자대표 참여 배제)
17	산업안전보건법	• 산업재해 발생 불성실 보고
18	산업안전보건법	• 위생시설 설치장소 미제공 및 시설 이용 비협조
19	산업안전보건법	• 휴게시설 미설치
20	산업안전보건법	•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불이행
21	산업안전보건법	•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위반
22	산업안전보건법	•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위반 (책임자 미지정)
23	산업안전보건법	•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위반 (미작성)
24	산업안전보건법	• 안전보건교육 미실시

구분	법령	법위반 행위
25	산업안전보건법	• 근로자 대표의 참석의무 미이행
26	산업안전보건법	• 불성실 보고
27	폐기물관리법	• 전용용기제조업 등록 불성실 신고
28	폐기물관리법	• 불성실 신고 보고를 통해 적합성 확인 구득
29	폐기물관리법	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·장비에 관한 불성실 신고
30	폐기물관리법	• 폐기물의 인계·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불성실 입력
31	폐기물관리법	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불성실 신고
32	폐기물관리법	•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입력
33	폐기물관리법	• 유해성 정보자료의 불성실 작성
34	폐기물관리법	•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미제공
35	소음진동관리법	•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의 불성실 신고
36	소음진동관리법	• 변경신고의 불성실 신고
37	소음진동관리법	• 생활소음·진동이 발생하는 공사의 불성실 신고
38	소음진동관리법	• 소음허용기준 위반 운행자의 개선사항 불성실 보고
39	소음진동관리법	•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미실시
40	물환경보전법	•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시작 불성실 신고
41	물환경보전법	•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의 불성실 신고
42	물환경보전법	• 비점오염원 설치의 불성실 신고
43	물환경보전법	•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의 불성실 관리
44	물환경보전법	• 공유수역 관리 규정의 미이행
45	물환경보전법	• 폐수의 인계·인수에 관한 내용의 불성실 입력
46	물환경보전법	•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미시행
47	지방세기본법	•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의 성실신고 방해 행위